



제 426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29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수의사·동물보건사에 대한 폭행·협박 및 동물병원 파괴·손상 금지 ..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3. 21.

다. 회 부 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를 폭행·협박하거나 기물을 파손 또는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물 진료행위 중인 수의사에게 가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수의사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고 있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동물보건사에 대해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수의사의 진료권 및 동물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수의사·동물보건사에 대한 폭행·협박 및 동물병원 파괴·손상 금지

개정안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동물병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보건사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항 및 안 제39조제1항·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생략)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누구든지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동물병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③ 누구든지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보건사를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신설>	제39조(벌칙) ①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현행	개정안
<신설> ① · ② (생략)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최근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협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¹⁾ 이에 따른 수의사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동물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 또는 동물보건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동물병원에서의 기물 파괴·손상 및 점거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죄의 경중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1) 수의사회에서 2024년 8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동물병원 폭력, 폭행 등 피해사례는 폭언 15건, 폭행 10건, 협박 9건, 파손 2건, 소란 3건, 위협 8건 등으로 파악됨.

수의사 또는 동물보건의사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동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인(人) 의료에 관한 입법례로 「의료법」 제12조 및 제87조의2,²⁾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60조,³⁾ 「약사법」 제22조의2 및 제93조⁴⁾의 경우 「형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2)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偽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 4) 「약사법」 제22조의2(약국·약사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약국(약국 외에서 조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약국에서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하여 약사·한약사의

＜ 업무방해 및 폭행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비교 ＞

구 분	형 법	의료법	응급의료법	약사법	수의사법 개정안
시설 등 파괴· 손상· 점거	제366조(재물손괴)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제314조(업무방해)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제87조의2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60조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3조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안 제39조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 협박	제260조(폭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반의사불벌죄 규정) 제283조(협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반의사불벌죄 규정)	제87조의2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규정)	제60조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3조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규정)	안 제39조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제87조의2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	제60조제1항 : 10년 이하 징 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	안 제39조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	제258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87조의2제1항 :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60조제1항 : 3년 이상 유기 징역	-	안 제39조제1항 :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	제259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제87조의2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60조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안 제39조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

2의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한 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첫째, 「의료법」, 「응급의료법」, 「약사법」 등에 따른 처벌의 수준은 각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의료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의 정도와 「의료법」의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유사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은 당해 행위가 의료인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는 “환자”의 생명 및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경우도 수의사 또는 동물보건사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는 “동물”의 생명 및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유사입법례는 폭행·협박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바, 수의사법에도 유사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조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안 제15조의 조 제목은 ‘진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또는 동물보건사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대한수의사회는 조속한 개정을 통해 수의사의 진료권 및 동물의 건강권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